

# 의 정 정 보

---

2005 - 4 2. 28

## 목 차

---

I. 타 사·도 의회동향	1
II. 새 법령 소식	4
① 입법 예고중인 법률안(5건)	4
② 새로 제정된 법령(2건)	6
③ 개정 법령(4건)	8

---

# I. 他 市·道 議 會 動 向

## ① 경기도의회, ‘경기특별도법’ 제정 촉구

- 경기도의회는 ‘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’을 작성하고 건의문을 중앙요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.
- 건의안에 따르면 “경기도는 그동안 행정·재정적으로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아왔다”면서 “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지역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특별도 설치를 요구한다”고 밝혔다.
- 이 같은 기조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특별도법에 ▲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기회 부여 ▲행정기구·정원 증원 ▲건설교통부가 아닌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정책 추진 ▲주요정책에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성실한 협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.

## ② 경상북도의회, 일본 시네마현의 ‘다케시마의 날’ 조례안 상정에 강력 대응

-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지난 2월 22일 ‘다케시마(竹島, 독도의 일본 명칭)의 날’로 정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했다.
- 이에 대해, 경북도의회는 “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”며 비난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- 한편, 경북도는 시네마현과 자매결연하여 시네마현에 파견중인 공무원들 소환하고, 道에 파견은 시네마현 공무원에 대해 출근 정지시켰다.

### ③ 울릉군의회, 독도서 '3.1절 기념행사' 개최

- 일본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를 하고 지난 2월 22일 '다케시마의 날' 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이에 울릉군의회에서는 금년 3.1절 기념행사를 독도에서 개최기로 했다.
- 울릉군의회는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대표, 군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독도의 동도에서 일본의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.
- 또한 울릉군의회에서는 전국 시·도의회 의장협의회, 전국 시·군·자치구 의장협의회에 '독도의 날' 지정을 건의하고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.

### ④ 경기도, '자치입법 예고 개별통지제' 실시

- 경기도는 올해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.
- 경기도는 올해부터 자치법규 제정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'입법예고 개별통지제'를 실시하고 경기넷에 입법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.
- 이에 따라 조례·규칙을 제정할 경우 도보에 고시했던 방식을 바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례(규칙)안을 개별 통지하기로 하였다.
- 또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의 재결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'인터넷 고지제' 를 도입·운영키로 했다.

**5 강원도의회, '道 출연·출자금 사전심사 강화조례' 의원발의 추진**

- 강원도의회는 '출자·출연관리 조례안'을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道가 지방공사나 출자법인 등에 지원해오던 출자·출연금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.
-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자·출연심의위원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기로 심의한 뒤 출자·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道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道의 출자와 출연에 상당부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-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출연금을 선 집행하고 의회에 후 보고해 의원들의 비난이 발단되어 추진하게 됐다.

**6 광주시의회, '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조례' 제정**

- 광주시의회는 의원발의 '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'를 제정하였다.
- 이 조례는 자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대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.
-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30명 가운데 절반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게 하므로써 장애인들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·이행,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자료 조사·수집, 제도개선·예산지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.

## Ⅱ. 새 法令 소식

### ① 立法 豫告中인 法律(案) - 5 件

####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

-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, 지방의회 승인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
-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작성권의 지방이양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작성·통보하는 “예산편성지침” → “예산편성기준” 으로 변경
-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금관련 용어통일을 위해 “기금운영계획” → “기금운용계획” 으로 변경

#### ②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

-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경우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남녀평등권을 보장
-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일정을 공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 통보를 하여 예비군대원에 대한 편익 제공

#### ③ 병역법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

- 현역병모집 합격자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교부가능
-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장애등급이 장애내용과 상이하거나 장애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징병검사 가능

#### ④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

-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“납입자본금은 100억원 → 70억원”으로, “상근 전문인력은 3인 → 2인”으로 각각 완화
- 창업투자회사·창업투자조합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자본금(출자금)의 50/100을 투자하도록 하되,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 규모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규정 적용 배제
-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/100 → 1/100로 완화
- 공장설립에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창업자는 시장·군수에게 신청하고, 시장·군수는 7일 이내 회신

####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

-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 까지 하천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도록 하고,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
- 내실있는 골재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도별 골재 수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는 미리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
- 하천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등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

## ② 새로 制定된 法令 - 2 件

###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시행 '06.1.27)

헌법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

-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
  -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행정부·특별시·광역시도·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설립
-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
  -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,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,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조 가입을 금지
-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(專任)자
  -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, 전임자 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
- 대표자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
  -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·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 사무총장·행자부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,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되
  -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

○ 단체협약의 효력 등

-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·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,
-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

○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의 금지

-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파업·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

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(시행 '06.1.27)

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시설을 구축

-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, 지자체의 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- 시장·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·도입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조치
-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

### ③ 改正 法令 - 4 件

#### 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(시행 '05.1.27)

- 친일 반민족행위 조사범위를 일본군대 군인의 경우 종전 “중좌 이상의 장교” → “소위 이상의 장교” 로 하고,
  -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,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·반출에 협력한 경우도 조사범위에 포함
-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전 “3년 이내” → “4년 이내” 로 확대하고,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

####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(시행 '05.4.27)

-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,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위가 어려움
- 따라서,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, 개인 신용정보의 고용기업에의 제공규정을 삭제하여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

#### ③ 농작물 재해 보험법중 개정법률 (시행 '05.4.27)

-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전액지원
  - 보험운영비의 인상은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지고, 이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가 많아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·일본·스페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보험운영비의 전액을 지원

-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액 지원
- 농가부담의 경감에 따른 보험가입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고,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

#### ○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

-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였던 민간보험사들이 240억원의 손실을 입고 2003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하였고, 2003년 사업을 추진한 농협도 태풍 “매미”로 인하여 327억원의 손실을 입고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,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
-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농작물재해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할 보험료 및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
-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여 줌으로써 민영보험사들이 동 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국내 보험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보험대상 품목 및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·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

-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한 결과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, 국가부담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였다가 지급시기 도래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
- 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,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, 재보험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
- 국가부담 재보험금의 적기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고, 신속성·신속성·독립성 등을 갖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출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

④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(시행 '05211)

- 지자체가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종전 “행자부장관 승인” → “광역시·도의 경우 승인없이” 자체책정 가능
- 지자체가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5급(동장)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하여 행자부장관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자율 결정 가능
-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
  - 지자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자체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
  -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

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범 실시

-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·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능 강화

- 현재의 지자체 조직진단제도는 조직운영에 대하여 행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통제가 행하여지는 환경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로서 제도의 내용도 형식적이고 운영실적도 미흡하였으나, 조직자율권이 대폭 강화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상응하여 조직진단제도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가 요구
- 지자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과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되, 행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직운영상황을 비교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현저하게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자부장관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진단제도를 개선·보완
-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등 조직자율권 강화에 상응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○ 4급 출장소장 설치대상 조정

-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출장소장의 직급이 낮아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
- 도·농 복합형태의 시 중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과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대하여만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도·농복합형태의 시로 확대하되,  
이 영 개정으로 새로이 대상에 포함된 시의 경우에는 본청 실·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